

울산 신천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입주자모집공고(안)

※ 본 아파트 모집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hyosung.co.kr>)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 11. 20(금)입니다.

■ 인쇄물은 건본주택(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입니다.

■ 이 주택은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13.05.31./2015.02.27.)으로 인해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 및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이 완화되고,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이 확대 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 대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축소(85㎡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함.

-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이 완화되어 유주택자 (1주택자 이상)에게도 청약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합니다.(단, 수도권보금자리주택,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를 자격 부여)

■ 이 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형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청약예금, 종합저축 등)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가점제40%, 추첨제60%)

■ 본 아파트는 정부에서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만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부터는 2순위 청약도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청약시스템 APT2you (www.ap2you.com)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적격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 자격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의2 제2항에 의거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한 자로 명단이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의2 제3항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당첨제한기간 경과 후 당해 청약통장 사용가능).

■ 신청자격별, 순위별 청약 접수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전매행위 및 재당첨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의 지역 비투기과열지구 중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주택법」제41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제45조의2 제2항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거 전매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청약지역 확대 및 저층 우선배정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청약가능지역을 해당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0조 제3항에 따라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 발생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고령자와 장애인 최하층 우선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20.)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하며, 필로티가 존재하는 층은 필로티를 제외한 층 중 최저층을 말함)

*** 1 건설위치 및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 - 0000호 2015.11.19(목)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40번지 외 49필지

■ 대지면적 : 30,554㎡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5층 11개동 총 91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 총 914세대 중 일반분양 743세대, 특별공급 171세대(일반 57세대, 다자녀 57세대, 신혼부부 57세대 포함)

(단위 :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면적	공급세대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분양	계	최저층 세대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일반	다자녀	신혼부부			
영주택	2015001352-01	59.5699	59	59.5699	21.5604	81.1303	2.0815	26.2231	109.4349	27.4699	21	21	21	273	336	15
	2015001352-02	74.9554	74	74.9554	26.4817	101.4371	2.6192	32.9960	137.0523	34.5647	17	17	17	225	276	12
	2015001352-03	84.1449	84	84.1449	29.6798	113.8247	2.9403	37.0412	153.8062	38.8023	19	19	19	245	302	14
	공급세대 합계										57	57	57	743	914	41

*** 2.공급가격**

■ 공급일정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세대)

주택형	공급 세대	층구분	해당 세대	분양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1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30%			
							계약시	2016.04.20	2016.08.22	2016.12.20	2017.05.22	2017.10.20	2018.02.20	입주지정일			
59.5699 남서향	200	2층	9	50,473,300	168,126,700	218,600,000	21,860,000	21,860,000	21,860,000	21,860,000	21,860,000	21,860,000	21,860,000	21,860,000	21,860,000	65,580,000	
		3층	9	50,473,300	171,526,700	222,0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22,200,000	66,600,000
		4층	9	50,473,300	175,026,700	225,50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67,650,000
		5~9층	45	50,473,300	178,826,700	229,300,000	22,930,000	22,930,000	22,930,000	22,930,000	22,930,000	22,930,000	22,930,000	22,930,000	22,930,000	22,930,000	68,790,000
		10~15층	54	50,473,300	179,526,700	230,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23,000,000	69,000,000
		16층이상	74	50,473,300	181,826,700	232,300,000	23,230,000	23,230,000	23,230,000	23,230,000	23,230,000	23,230,000	23,230,000	23,230,000	23,230,000	69,690,000	
59.5699 남동향	136	2층	6	50,473,300	168,226,700	218,700,000	21,870,000	21,870,000	21,870,000	21,870,000	21,870,000	21,870,000	21,870,000	21,870,000	21,870,000	21,870,000	65,610,000
		3층	6	50,473,300	171,626,700	222,100,000	22,210,000	22,210,000	22,210,000	22,210,000	22,210,000	22,210,000	22,210,000	22,210,000	22,210,000	22,210,000	66,630,000
		4층	6	50,473,300	175,026,700	225,50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22,550,000	67,650,000
		5~9층	30	50,473,300	178,926,700	229,400,000	22,940,000	22,940,000	22,940,000	22,940,000	22,940,000	22,940,000	22,940,000	22,940,000	22,940,000	22,940,000	68,820,000
		10~15층	36	50,473,300	179,626,700	230,100,000	23,010,000	23,010,000	23,010,000	23,010,000	23,010,000	23,010,000	23,010,000	23,010,000	23,010,000	23,010,000	69,030,000
		16층이상	52	50,473,300	181,926,700	232,400,000	23,240,000	23,240,000	23,240,000	23,240,000	23,240,000	23,240,000	23,240,000	23,240,000	23,240,000	69,720,000	
74.9554	276	2층	12	63,509,400	207,590,600	271,100,000	27,110,000	27,110,000	27,110,000	27,110,000	27,110,000	27,110,000	27,110,000	27,110,000	27,110,000	27,110,000	81,330,000
		3층	12	63,509,400	211,890,600	275,40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27,540,000	82,620,000
		4층	12	63,509,400	216,190,600	279,700,000	27,970,000	27,970,000	27,970,000	27,970,000	27,970,000	27,970,000	27,970,000	27,970,000	27,970,000	27,970,000	83,910,000

		5~9층	60	63,509,400	220,990,600	284,50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85,350,000
		10~15층	72	63,509,400	221,890,600	285,400,000	28,540,000	28,540,000	28,540,000	28,540,000	28,540,000	28,540,000	28,540,000	85,620,000
		16층이상	108	63,509,400	224,690,600	288,200,000	28,820,000	28,820,000	28,820,000	28,820,000	28,820,000	28,820,000	28,820,000	86,460,000
84.1449 남서향	110	2층	5	71,295,700	232,204,300	303,50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30,350,000	91,050,000
		3층	5	71,295,700	237,004,300	308,300,000	30,830,000	30,830,000	30,830,000	30,830,000	30,830,000	30,830,000	30,830,000	92,490,000
		4층	5	71,295,700	241,804,300	313,10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31,310,000	93,930,000
		5~9층	25	71,295,700	247,304,300	318,60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31,860,000	95,580,000
		10~15층	30	71,295,700	248,204,300	319,50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31,950,000	95,850,000
		16층이상	40	71,295,700	251,404,300	322,70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32,270,000	96,810,000
84.1449 남동향	192	2층	9	71,295,700	232,304,300	303,600,000	30,360,000	30,360,000	30,360,000	30,360,000	30,360,000	30,360,000	30,360,000	91,080,000
		3층	9	71,295,700	237,104,300	308,400,000	30,840,000	30,840,000	30,840,000	30,840,000	30,840,000	30,840,000	30,840,000	92,520,000
		4층	9	71,295,700	241,904,300	313,200,000	31,320,000	31,320,000	31,320,000	31,320,000	31,320,000	31,320,000	31,320,000	93,960,000
		5~9층	45	71,295,700	247,404,300	318,700,000	31,870,000	31,870,000	31,870,000	31,870,000	31,870,000	31,870,000	31,870,000	95,610,000
		10~15층	54	71,295,700	248,304,300	319,600,000	31,960,000	31,960,000	31,960,000	31,960,000	31,960,000	31,960,000	31,960,000	95,880,000
		16층이상	66	71,295,700	251,504,300	322,800,000	32,280,000	32,280,000	32,280,000	32,280,000	32,280,000	32,280,000	32,280,000	96,840,000

(공통 유의사항)

-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 당첨 및 동호수 배정은 해당 주택형의 모든 동호수를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 (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0.3025 또는 m²÷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동출입구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 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까지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합산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동·호수는 지정할 수 없으므로 전산추첨 결과와 배정된 동호의 주택가격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금액이며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단지 내 비주거시설(상업시설 등)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자 소유가 아닌 별도로 분양되는 시설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등)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등)의

계약은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주택가격(분양금액)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중 50%공정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중도금 대출이자는 분양가의 총 60% 내에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 사업주체에서 대납해주며, 입주시 납부된 이자를 사업주체에 입주전까지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개시 일로부터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대출은행에 직접 납부해야 함.(중도금 이자후불제)
- ※ 중도금대출 신청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지세-75,000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은 계약자 부담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 시 확정측량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단,소수점 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아니함)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3.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면적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청약 접수일시/장소	당첨자 선정일시/장소	동호배정 발표일자 (일반공급분과 동일)
59.5699 74.9554 84.1449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2015.11.25(수) (10:00~14:00) 울산 남구 달동 979번지 당사 견본주택	2015.11.25(수) (17:00) 울산 남구 달동 979번지 당사 견본주택	

※ 공통사항

가. 당첨자 선정 및 공고 유의사항

- 당첨자선정 및 공고 일시와 관련하여 특별공급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합니다.(동호수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주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합니다.
- 특별공급의 당첨자선정 순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순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일 :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과 동일(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참조)

나. 특별공급 유의사항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당첨시 무효처리되며, 특별공급 신청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무효·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따른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또는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 후라도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취소·해제됨은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분양금 반환시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는 별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 6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20)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 구성원 중 만65세 이상인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 받은 자 중 주택공급신청시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당첨자에 한하여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층이라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하며, 필로티가 존재하는 층은 피로티를 제외한 층 중 최저층을 말함)

다.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일반 특별공급(단, 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주택 소유자는 제외), 제19조 제6항에 의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 ※ 각 청약통장으로 지역별 예치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면적에 모두 청약가능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2015.02.27.) 개정사항 안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p>『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p> <p>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①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이고, ② (세대주 및 세대원 중)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무주택일 때, ① + ②에 포함된 사람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참조) ⇒ ①에 해당하는 분들 중 ②를 충족하시는 분만이 특별공급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①과 ②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동일함)</p> <p>※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p>
------------------	--

1-1) 일반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19조 제2항)

■공급 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 합니다.

구 분 (㎡)	59.5699	74.9554	84.1449	소 계
공급 세대수	21	17	19	57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국가유공자 등)을 받으신 분(단, 특별공급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제외),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 해당기관에서 인정서류를 발급받은 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선정합니다.

1-2)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6항)

■공급 세대 :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 합니다.

구 분 (㎡)	59.5699	74.9554	84.1449	소 계
공급 세대수	21	17	19	57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입주자 선정방법

-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 (입양아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중 영유아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3세대는 직계비속으로 구성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신청자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신청자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10년미만	15	
		1년이상~5년 미만	10	
		1년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특별공급 신청시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관련사항은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1-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7항)

■공급 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의 10% 범위 이내로 특별공급 합니다.

구 분 (㎡)	59.5699	74.9554	84.1449	소 계
공급 세대수	21	17	19	57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다만,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시 임신중인 경우 태아의 수는 각각으로 산정)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
- 임신의 경우 신청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불법 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 [신청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산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진단서, 임신지속시 임신진단서 등)를 제출해야 함]
-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함)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분	2014년도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위 : 원)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4,734,603이하	5,224,645이하	5,560,026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5,681,524이하	6,269,574이하	6,672,031이하

-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560,026원)+(1인당 평균소득(412,712원) X (N*-5)) *N→6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만19세 이상의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전원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19세 이상 직계 존·비속의 소득도 합산합니다.(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아래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관련사항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입주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순위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정함	1)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2)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위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많은 자 3) 미성년 자녀수(태아 포함)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되고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 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해당)도 포함하며, 임신중인 경우에는 태아수에 따라 자녀로 인정함.

1-4)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일반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 불가])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민 제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 입양 입증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한부모 가족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무주택서약서(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함)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 받고자 하는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임신증명서류(자녀를 임신중인 경우)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 의료보험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소득 증빙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징구))
제3자 대리인신청시 추가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입증관련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사업자 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접수장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	59.5699	74.9554	84.1449	계
일반 특별공급	21	17	19	57
다자녀 특별공급	21	17	19	57
신혼부부 특별공급	21	17	19	57
계	63	51	57	171

2) 일반공급

가.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세대주(만 19세 미만이라도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단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이므로 기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더라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로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분은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취소 또는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전세대(전용면적 85㎡이하)를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합니다.

나. 입주자 선정방법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순위요건” 및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변경불가)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2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주택형별 접수 마감여부는 접수당일 오후 9시 이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 및 집계상황에 따라 게시시간 및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 소유 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주거전용면적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납입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신청가능 전용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이후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주택의 규모를 상향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합니다.

■19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85㎡이하·초과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액

구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용면적 85㎡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135㎡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의3 제4항 관련)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청약이 가능함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2조제2항 관련)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하단의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참조)에 의한 높은 점수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가점제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4호 [별표1])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청약자가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상 분리시 부양가족수 산정) - 가입자 본인은 제외 후 부양가족수 산정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이상~2년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이상~3년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총점	84	/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청자격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시가격이 비수도권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 합니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단,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p>
<p>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합니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세대주 자격 필수)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세대주 자격 필수)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봅니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p>
<p>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합니다.</p>

3) 청약 신청방법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1,2순위 청약신청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특별공급(일반 특별공급분, 다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분,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전원 청약순위별로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1.20) 현재 만65세 이상인자와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또는 세대원으로 신청 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자 중 당첨자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형 1층을 우선 배정합니다.[단, 1층이 없는 주택형은 최저층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1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중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 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청약 접수시 유의사항

- 청약 신청접수일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전자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야 하며,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가 추가되오니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기재방법
 - ① 거주개시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20)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②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재당첨제한 등 청약자격 제한조건을 확인하시어 향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됩니다.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형. 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입주자모집공고(2015.11.20)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비수도권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제 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2015.11.20)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 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2015.11.20)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20)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 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4. 일반공급 신청일정 및 장소**

▣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 분	순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 주택	1순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2015.11.26.(목)	* 접수장소 : 인터넷(08:00~17:30) - 기타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일시 : 2015.12.03(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www.sc-hyosung.co.kr),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2순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2015.11.27(금)	* 접수장소 : 인터넷(08:00~17:30) - 기타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청약관련 예금 및 신청자격

•1순위

- 85㎡ 이하 : 가점·추첨제 적용 / 85㎡ 초과 : 추첨제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1순위자가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순위

- 전주택형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 은행방문접수 : 2순위 인터넷접수 참가은행(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스탠다드차타드, 한국시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09:00 ~ 16:00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계약 취소,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추후 당사 일정에 따라 모집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및 국민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참가은행 계좌 개설자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2) 2순위 : 주택청약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 (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금융결제원홈페이지 (www.apt2you.com) 접속 ■ APT인터넷청약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2009년 4월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종합저축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 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 방법	
전주택형	100만원	창구 청약 시	청약을 접수하는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시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에 계좌 개설 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해야 함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대 상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 비 서 류	
창구 청약신청자 (자동환불 미신청자)	당첨자발표 익 영업일 [2015.12.04.(금)] 평일09:00~16:00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 접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제3자 대리 환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재외동포,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창구 청약신청자 (자동환불 신청자)	당첨자발표 익 영업일 [2015.12.04.(금)]	자동이체	-	•자동환불 신청계좌(접수은행에 개설된 본인명의 요구불계좌에 한함)로 자동 환불
인터넷 청약신청자	당첨자발표 익 영업일 [2015.12.04.(금)]	자동이체	-	•본인이 2순위 청약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 이체됨

※ 2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2순위 청약신청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p>·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합니다.</p> <p>·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p> <p>·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일반공급	<p>·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모두해당)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2015.11.20) 현재 주택건설지역(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p> <p>·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전용면적 85㎡이하평형은 40% 가점제 60%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p> <p>·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p> <p>·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최초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당첨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p> <p>·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p>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모델하우스)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해야 합니다.(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합니다.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및 당첨자 발표신문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접속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5.12.03.~2015.12.12(10일간)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 코드: 9 → 1 → 3]	전자금융공동망(1369)[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15.12.03.~2015.12.12(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제공일시	2015.12.03(목). 08:3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1.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일시
 - **정당당첨자 : 2015. 12. 8(화) ~ 2015. 12. 10(목) (3일간, 시간 10:00 ~ 16:00)**
-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 문의전화 : 052)298-0123)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2. 계약시 구비 서류

구 분	구비사항
정당당첨자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계약자의 인감도장 ·계약금 입금확인증(계약당일 아래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양식은 건본주택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1.20)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자(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시)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1부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은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공통)

- 지정된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우리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602-811195	국제자산신탁(주)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에 대한 추첨 및 계약안내

- 정당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대상자 소명기간(부적격대상자통보일로 부터 7일) 이후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입주예정일 : 2018년 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자 사전점검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 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일전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공사비

(단위:m²,원,VAT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59.5699	74.9554	84.1449
발코니 확장공사비	8,600,000	10,800,000	12,100,000

※ 발코니 금액은 최저형별 금액이며, 세부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일정 및 금액에 대해서는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상 명시 예정

2.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공사비	우리은행	1005-602-811202	국제자산신탁(주)

3.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05.12.2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타사제품 포함)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 별도의 행위허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타입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추가선택품목(플러스 옵션) 납부계좌

※ 추후 별도 안내예정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1.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공통)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품목
①	바닥재	온돌마루(걸레받이포함) 거실,침실,주방,식당,복도바닥재 재료분리대	바닥난방,바닥방수,현관바닥 발코니바닥
②	벽지	벽지(아트월,타일,무늬목,쉬트 도장등포함) 천정지(도장포함)	우물천장, 물딩, 경량벽
③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욕실천장조명기구,배관,배선 (스위치및콘센트등)
④	욕실	타일,석재(바닥), 강화대리석(세면대 뒷선반 등) 욕실장,샤워부스,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코킹	욕실천장,방수(바닥,벽체) 바닥미장
		욕조,양변기,세면기,수전류 액세서리류,비데	설비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
⑤	주방가구	주방가구(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기기료(가스쿡탑등),주방TV	후드
		주방수전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시스템
⑥	가구	신발장,불박이장,화장대 (상판 및 벽체강화대리석포함) 수납장	-
⑦	창호	창호(문틀,문짝,문선, 하드웨어포함)	가틀(세대내창호부위),커튼박스 현관문, 도어락,소방관련방화문

※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m², 원)

주택형	옵션금액
59.5699	17,700,000
74.9554	22,120,000
84.1449	24,820,000

3.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1)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2)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3)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4)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5)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가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6)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 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7)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8)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9)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10)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11)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12)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3)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14)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15) 마이너스옵션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16)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사, 시공사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따라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7) 마이너스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건본주택

- 건본주택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선택옵션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입니다.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 품목,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건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시 건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합니다.
(일부 사항은 설계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 등의 절차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강화대리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 세면대 뒷선반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하부 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바닥, 배면 등)은 별도 마감이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일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설치되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바닥턱은 사용편의성, 바닥드레인 설치위치 변경 등에 의해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옵션 선택에 따라, 해당 타입에 따라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의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비확장형)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으며, 사양(램프의 종류 및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확장 부분의 외부샷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홍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한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신발장, 창고장(팬트리 포함) 또는 침실불박이장의 하부 또는 배면, 침실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합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불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가 세대내 발코니에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품품목 등)가 적용 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창호류, 세대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²)×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 단지내 상업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의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시설로서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당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등기 시 공급면적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확정측량 결과,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방음벽·안전난간 등의 종류·높이·위치·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TOP LIGHT(천창), 상가, 관리동, 주차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층격을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을 저감하도록 계획함에 따라, 층간소음·진동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계산 배분됩니다.
-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지상주차 및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향후 입주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 초등학교 배정은 인근 동대초등학교로 지정되며 매곡중산지역 학생 수용 여건에 따라 약수초등학교로 수용 될 수도 있습니다.
-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지역정압기실 설치 현장으로 시행사는 개별분양자를 대신하여 지역정압기실 부지 점용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대표위원회가 구성될 시 기 체결된 점용계약을 조건 없이 승계합니다.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거부 대지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사전 분양홍보자료 및 각종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닌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의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광역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경관심의 등)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표현된 평면은 입면재료, 창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면이며,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재료 및 창호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의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면재료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상세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하부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자전거보관소, 운동기구, 쓰레기분리수거 보관시설, 무인택배시설 또는 휴게시설 등이 설치될 경우, 이용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설치 여부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방법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으며, 배치도(CG, 모형 등)의 바닥 마감패턴, 칼라 등은 추후 디자인 의도 및 인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부지외에 사업부지(공원 등)는 준공시까지 조성하여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인허가(실시계획인가 등)결과 및 현장여건 등에 의해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 계획 및 학교 수용계획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경관계획(야간경관조명 포함),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으로 14m도로, 남측으로 23m도로, 동측으로 30m도로, 북측으로 30m도로와 근접합니다.(일부 도로는 인접 부지 개발계획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준공시까지 일부 구간의 도로폭이 축소되어 개설 될 수 있음)
- 단지 동, 서, 남, 북측 도로와 단지 사이에 별도의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남측 23m 도로에 주출입구, 서측 14m도로에 부출입구가 위치합니다.
- 야간조명 효과, 야간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부지는 주변 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옹벽, 조경석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의 배치에 따라 일조 및 조망이 다를 수 있으며,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조망과 일조량 등이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 대비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추후 비상차, 소방, 이삿짐 구획으로 활용 될 수 있음)
- 단지 내 재활용 창고, 쓰레기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소, D.A, TOP LIGHT, 조경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진입가능 높이는 최소 2,300mm 이상입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진입도로에 근접하여 2개소의 지하주차 진출입구가 설치되며, 근처 주동 108동, 109동, 110동, 102동, 101동 저층부 세대의 차량조명,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남측 도로변에 위치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가 111동과 근접해 있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111동과 근접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 및 옥상의 난간 및 돌출부에 의해 111동 저층세대에 조망, 일조 및 프라이버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실외기**, 환기 시스템 및 공조 시스템, 이용객 등으로 인한 소음, 냄새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은 공동주택(102동~104동)데크층에 설치되어 있고, 그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주민 커뮤니티시설 및 단지 내 설치되는 외부 커뮤니티 공간(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근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의 내부구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커뮤니티센터의 집기는 시공,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 내의 집기, 비품 설치 및 운영, 유지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및 조경, 고층아파트 특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및 기타시설물 사용 시 입주 후 사용분에 대하여 공동관리비가 부과되며, 이러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105동, 106동 후면부에 6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어 후면부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중앙부에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이 배치되어 있어 저층부세대의 야간조명 등에 의한 눈부심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07동 좌측 후면부에 정압기가 인접 설치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비확장 발코니에 바닥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의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의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59형 부부욕실은 공간이 협소하여 샤워시 욕실도어, 비데, 휴지걸이, 수건걸이 등 물이 될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비데가 고장나거나 도어 등이 부식될 수 있으니 샤워커튼 등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사용 후 물기를 반드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 74형 침실3은 승강기와 접해 있어 승강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실의 배기는 공동배기, 가스렌지 후드 배기는 직배기, 전열교환기의 급배기는 실외기실 창호 루바 상부에 급배기구가 설치됩니다.
- 일부 주택형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마감자재의 색상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이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전, 가구와 다르게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구 사이즈를 확인바랍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수전 및 바닥배수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실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건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은 건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건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조명 및 스포트조명은 전시용입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 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가구 배치 및 마감이 확장세대와 상이하고, 주방 발코니 상부는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유리포함)는 추후 풍압검토 결과에 따라 BAR SIZE 및 규격, 하드웨어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전면의 계단실 또는 채광창의 위치는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건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시설은 본 아파트 분양과 관계없는 별도의 분양시설로 추후 건축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주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가시설의 입주시기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소방법 준수를 위한 소방설비 및 제연 시설물의 위치 및 개수 등의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식재계획, 미술작품 등의 설치는 각종 심의 및 미관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의 동의 없이 실제 시공시 단지조경 시설물, 식재, 포장 및 미술작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진행하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건립세대 내,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 등은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에 따라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6항 제9의3호 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내 용	설치 사양 및 성능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직/간접 면한 창호의 기밀성능은 KS F2292 기준 1등급 제품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급수펌프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적용, 보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각 1개소씩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전용면적 60㎡초과 세대 :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전용면적 60㎡이하 세대 : 해당없음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지식경제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조명기구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화장실내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에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 가능한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회사	감리금액	비고
건축	(주)우정유빅스엔지니어링감리전문회사	2,228,461,400	
전기	경기엔지니어링 (주)	590,178,869	
소방	(주)태양유니스	165,000,000	
통신			

■ 분양보증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15-101-0020500호	₩176,501,220,000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1조제4호)

•“보증사고”라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사업주체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사업주체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사업주체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 (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사업주체·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관리형 토지신탁**

- 본 아파트는 위탁자“애플디앤씨 주식회사”, 수탁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시공사 “진흥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효성” 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으로 수탁자는 관련 법률 및 본 공급계약 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이를 초과하는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사업부지(향후 사용검사 예정인 본 건축물을 포함)에 대한 신탁계약 해제나 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애플디앤씨 주식회사”와 수탁자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사업주체')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수탁자의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의무 및 책임부담은 위탁자에게 공급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수탁사)	시공사	시공사	위탁사
상 호	국제자산신탁(주)	진흥기업(주)	(주)효성	애플디앤씨(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삼성동)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27(후암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방배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61, 401호(삼성동, 대훈빌딩)

▣ **건본주택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979번지**

▣ **분양문의 : ☎(052)298-0123**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